

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 항목(제12조제4항 관련)

구분	구성 항목
1. 총수입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매각수입,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임대료 및 사용료
2. 총사업비	토지취득비용, 도시조성비용, 자본비용,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

비고

1.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매각수입"이란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예상감정가격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블록 단위로 대표지점을 평가한 예상감정가격을 추계한 용역보고서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2. "토지취득비용"이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권리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을 말한다.
3. "도시조성비용"이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판매비 및 그 밖의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 가. 조사비: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
 - 나.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 다. 공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합계액
 - 라. 일반관리비: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 마.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필요한 비용
 - 바. 그 밖의 비용: 세금·공과금·부담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4. "자본비용"이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중 사업비 조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란 기업도시를 계획 기간 내에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처음의 투자계획에 따른 산업체의 설치·이전 등을 위하여 투입할 수밖에 없는 비용 또는 경비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